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[별지 제9호서식] <개정 2020. 11. 30.>

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 신청서 (위임용)

※ 뒤쪽의 유의	사항을 읽고 직	성하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표를 합니디	·. (앞쪽)	
	성명	연락처	주민등록번호	
		(서명 또는 인)		
위임한	주소		대상자와의 관계	
사람	 []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			
		단세 대성에 매성하여 누구표 단세를 선정됨 대상에 대해서는 뒤쪽 유의사항 3번을 참고하시기 바		
OLOL HLO	성명	연락처	주민등록번호	
위임 받은 사람		(서명 또는 인)	. = 3 . = =	
시금 (신청인)	주소 (시・	E) (시·군·구)	※ 시·도, 시·군·구까지만 작성	
	•	,	(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.)	
* 아래는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 대상자가 위임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 열람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				
달림 조근 등·초본	성명		주민등록번호	
교부 대상자				
	열람	[]등본 사항 []초본 사항		
	*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·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포함 여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또는 교부 대상자의 성명, 생년월일,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.			
		사항 전부 포함 []초본 사항		
	등본 교부 []통	1.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[]전체 포	[함 []직접 입력: 최근 <u></u> 년 포함	
		2. 세대 구성 사유	 []포함	
위임 내용 (신청내용)		3. 세대 구성 일자	 []포함	
		4. 발생일 / 신고일	 []포함	
		5. 변동사유		
		6.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・세대원・외국인등의		
		7. 주민등록번호 뒷자리	 []포함(□본인, □세대원)	
		8.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		
		9. 동거인	[]포함	
	초본 교부 []통	1.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	<u> </u>	
		2.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		
			[함 []직접 입력: 최근 <u></u> 년 포함 즈이이 라게	
		4. 주민등록번호 뒷자리	H주와의 관계 []포함	
		5.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		
			[]포함	
		6. 발생일 / 신고일	[]포함	
		7. 변동사유	[]포함	
		8. 병역 사항	E함(□기본(입영/전역일자), □전체)	
		9. 국내거소신고번호 / 외국인등록번호		
OF [1] [17]			[]포함_	
용도 및 목적				

청합니다.

> 년 월 일

시장・군수・구청장 또는 읍・면・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

첨부 서류	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(사본)
담당 공무원	신청인이 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 대
확인사항	상인지 여부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 수수료 면제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유의 사항

- 1.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인(위임받은 사람)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.
- 2.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에는 「형법」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.
- 3. 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가.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
 - 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
 - 다.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,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라.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
 - 마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(선순위자만 해당된다)이 신청하는 경우
 - 바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(선순위자만 해당하되,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)이 신청하는 경우
 - 사.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
 - 아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
 - 자. 「5・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・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(선순위자만 해당하되,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)이 신청하는 경우
 - 차.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(선순위자만 해당하되,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)이 신청하는 경우
 - 카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
 - 타.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
 - 파.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
- 4. 신청인은 '위임 내용(신청 내용)' 칸의 각 항목에서 '포함'여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5. "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"을 "직접 입력"으로 선택하는 경우,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.
- 6. 위임한 사람은 '서명 또는 인' 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(한글)을 써야 하고, 통상적인 사인(외국어, 특수문자 등)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7.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(사본도 가능)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해야 합니다.